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2130

제안년월일: 2021년 2월 3일 제 안 자: 교 통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조례안이 공항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항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것 은 다른 한정면허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무에서 '보조' 용어를 삭제하도록 함

2. 주요골자

○ 조례안의 내용 중 "보조하거나 융자", "보조나 융자"에서 보조를 제외하고 "융자"로 수정함(제8조제3항, 제4항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(제5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는 "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(의원발의안)	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
제8조(한정면허) ① · ② (생 략)	제8조(한정면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제8조(한정면허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
〈신 설〉	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	③
〈신 설〉	④ 제3항에 따른 <u>보조나</u>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 (제5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 우 "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자"는 "제8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로 본다.	④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(제5항은 제외한다)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는 "제8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한정면허) ①·② (생 략)	제8조(한정면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③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	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
	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
	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
	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
	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
	다.
<u>〈신 설〉</u>	④ 제3항에 따른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
	은 제4조부터 제6조(제5항은 제외한다)
	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3조에
	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는 "제8조제3항에
	따른 재정지원 대상자"로 본다.